

| | |
|-------|-----------|
| 의안번호 | 제 2760 호 |
| 의 결 | 2024. . . |
| 연 월 일 | (제 회) |

| | |
|------|--|
| 의결사항 | |
|------|--|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발 의 자 | 우정욱 의원 등 5인 |
| 발의연월일 | 2024. 3. 27. |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정욱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760 |
|----------|------|

발의연월일 : 2024. 3. 27.

발 의 자 : 우정욱, 김석한, 정영환,
이쌍자, 최두임 의원(5인)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업”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농어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등

나.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16호

- 예고기간: 2024. 4. 1.(월) ~ 4. 8.(월) [7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없음

4. 본문: 붙임과 같음

고성군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내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생산의 안정성 확보와 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력”(이하 “인력”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과 수산인,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 중개·파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력 지원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력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원을 위하여 고성군 농어업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력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인력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원계획 시행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인력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력 구인·구직 등록 및 일자리 알선
2.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
3. 인력의 관리 및 지원
4.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6. 자원봉사자 관리
7. 그 밖에 군수가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개, 교육 및 실습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이동 교통편 제공 및 지원
 3. 각종 검사 비용 및 외국인등록비용 등 지원
 4. 언어통역, 농작업 모니터링 등 근로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5. 감염병 방역 및 격리에 필요한 비용
 6. 농작업 도구 및 물품구매 비용 지원
 7.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나. 어획물운반업: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다. 수산물가공업: 수산동식물 및 소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품, 사료나 비료, 호료(糊料)·유지(油脂) 등을 포함한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라. 수산물유통업: 수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마. 양식업: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산업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양식업자와 같은 조 제13호의 양식업종사자가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전 지역

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 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